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10.28

[상담유형]

이메일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주임급

소속 : 원자력연구실

[상담 내용]

☆☆군청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. 신고 사항이 맞는지, 외부강의등의 수령가능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.

[상담 결과]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2에 의거,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그러나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☆☆ 군청의 경우, 지방자치단체로 신고 의무사항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이와 별개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1시간당(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) 40만원, 1시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최대 1시간 이상 강의등 진행 시 수령 가능금액 60만원)

[확 인] 2021.10.28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11.30

[상담유형]

이메일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원자력연구실

[상담 내용]

시국 상황 등으로 인해 화상회의나 문서회신으로
외부강의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하나요?

[상담 결과]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은 외부강의등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사례금을 받지 않는 건 이외에는 업무시간 내외 혹은 회사 이외의 장소 (온라인 등)에서 진행하는 사유로 신고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은 없으므로 유의하시어 신고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1.11.30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12.15

[상담유형]

이메일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원급

소속 : 원자력사업처

[상담 내용]

외부강의등에 참가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받아도 될까요?
사례금까지 고려하면 초과하는 것 아닌가요?

[상담 결과]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.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2. 적용기준의 라목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이에, 회사 여비규정을 참고하시어 여비 수령 시 실비 수준 범위 에서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1.12.15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2.01.2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원급

소속 : 기술전략실

[상담 내용]

설날 기간에 선물하고자 합니다. 가액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
[상담 결과]

가액범위에 들어가는 기준의 경우,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조(정의) 2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. 우선,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직자등에 해당 될 경우 동일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거, 금전, 유가증권 등 5만원 혹은 설날/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)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2.01.20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2.02.14

[상담유형]

이메일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SI사업그룹

[상담 내용]

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입니다. 전세 재계약 건도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?
세입자와 직무 관련은 없습니다.

[상담 결과]

-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32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)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. 세입자가 동일 규정 제2조(정의) 3,4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직무관련자/직무관련임직원과의 거래가 아닐 경우, 신고의 필요는 없으며 직무관련자/직무관련임직원과의 거래일 경우 별지 5호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)의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2.02.14

홍보팀장 홍은영